

## 판매일반조건

### 제 1 조 적용 범위

판매자가 제공하는 모든 물품과 서비스는 본 문서("판매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매자가 구매자의 일반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본 판매일반조건에 의해 거절됩니다. 본 판매일반조건은 향후 모든 사업에도 적용될 것이며, 판매자는 수시로 본 판매일반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본 판매일반조건 변경은 판매자의 명시적인 서면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 제 2 조 판매제의 및 수락

판매자의 시가견적은 구속력 있는 판매제의가 아니라 고객에게 구속력 있는 구매제의를 하도록 권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개의 판매계약("개별계약")은 판매자가 구매자의 주문(구매제의)을 수락 함으로서 체결됩니다. 수락 내용이 제의 내용과 다를 경우 그러한 제의수락은 판매자의 구속력 없는 신규 제의로 간주됩니다.

### 제 3 조 제품 정보

- 3.1 모형이나 견본품은 단순히 구속력 없는 견본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모형이나 견본품이 특정 특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3.2 제품 정보나 특정 특성의 차이는 사소하거나, 모든 주의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3.3 판매자는 본 판매일반조건 적용을 받는 물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이나 보장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법률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 암묵적으로 인정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묵시적인 조건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됩니다.

### 제 4 조 조인

상품 및 상품의 용도에 관한 기술적인 조인은 판매자의 연구 및 경험에 기초하여 판매자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공됩니다. 상품의 적합성과 용도에 관한 모든 조인과 정보는 판매자의 책임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구매자를 독자적인 조사 및 시험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면제하지 않습니다.

### 제 5 조 가격

판매자의 가격이나 판매자의 지급조건이 개별계약 체결일과 운송일 사이에 일반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판매자는 운송일 현재 유효한 가격이나 지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가격인상에 대한 통지 후 14 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통지하여 해당 개별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제 6 조 인도

인도는 해당 개별계약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행합니다. 일반무역조건은 해당 개별계약이 체결된 일자에 유효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에 따라 해석됩니다.

### 제 7 조 운송 중 손상

운송 중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클레임에 대한 통지는 해당 운송계약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당 운송인에게 구매자가 직접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자는 그 사본을 제공받습니다.

### 제 8 조 도착지 국가의 법률

구매자는 판매자가 인도한 상품의 수입, 인도, 보관 및 사용에 관한 해당 도착지 국가에서 적용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매자는 해당 도착지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할 모든 수입, 통관 관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합니다.

### 제 9 조 지급지체

- 9.1 지급일이 도래한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이는 중대한 계약위반을 구성합니다. 당해 구매가격에 대한 지급일이 도래하고, 구매자가 독촉장을 수령하고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판매자가 독촉장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늦어도 청구서 수령 및 당해 구매가격에 대한 적절한 지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당해 구매가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지급지체를 구성합니다.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구매자는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더라도 지급지체를 구성합니다.
- 9.2 전술한 경우 판매자는 지급일로부터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12%를 더한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 10 조 불일치

- 10.1 구매자는 해당 상품이 개별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예컨대, 하자, 잘못된 운송 또는 수량 차이 등), 해당 상품 수령 후 2 주 이내에 해당 불일치의 성격과 정도를 상세하게 명시하여 판매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합니다. 합리적인 검사를 하지 않고는 해당 불일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통지는 해당 상품 수령 후 6 개월 이내에 행할 수 있습니다.
- 10.2 구매자는 판매자의 계약위반이 계약의 전체를 이루는 중요부분에 대한 것이고 판매자의 구제책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판매자의 계약위반 후 판매자의 구제책이 구매자가 추가적으로 부여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개별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는 대체 상품의 인도나 판매자가 제의한 불일치에 대한 구제책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구매가격의 인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제 11 조 책임

- 11.1 판매자가 불일치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 구매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1.2 구매자가 입은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은 판매자가 초래한 손실 또는 손해 중 통상적인 것에 한합니다.

- 11.3 특수한 상황 하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판매자의 배상 책임은 당해 계약 체결 시에 판매자가 예측할 수 있었던 손해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판매자의 책임은 또한 판매자가 판매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으로 제한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판매자는 결과적 손해, 간접 손해 또는 징계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 12 조 상계 및 지급유보

상계 또는 지급유보는 다름이 없거나 또는 중국판결에 의해 신고되는 반대청구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제 13 조 담보

구매자의 지급능력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특히 대금을 채납하는 경우 판매자는 신용거래기간을 취소하고 추가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선지급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 14 조 소유권의 유보

- 14.1 단순 소유권 유보  
판매된 상품은 대금완납 전까지는 여전히 판매자의 재산입니다.
- 14.2 확대된 소유권 유보  
구매자가 인도된 상품의 대금은 지불하였으나 판매자와의 사업관계에서 발생한 다른 채무를 아직 완제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인도된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변제일에 도달한 모든 채무가 완제될 때까지 추가적으로 보유합니다.
- 14.3 가공 규정의 소유권 유보  
판매자가 인도한 상품을 구매자가 가공하는 경우, 판매자는 제조업자로 간주되어야 하며 새로이 생산된 상품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즉시 획득합니다. 가공이 다른 제품들을 포함할 경우, 다른 재료들의 송장 금액에 대한 판매자가 인도한 제품의 송장 금액의 비율로 판매자는 새로이 생산된 제품의 공동 소유권을 즉시 획득합니다.
- 14.4 판매자가 소유한 상품의 자유로운 처분  
만일 구매자가 기일 내에 판매자와의 사업관계 상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가 소유하는 상품을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 14.5 접근권  
판매자의 요청에 의해, 구매자는 판매자가 소유한 상품의 재고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14.6 지급지체  
구매자가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판매계약의 해약 및 유예 기간의 부여 없이, 판매자는 구매자의 비용으로 판매자가 소유한 상품의 일시적 양도를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제 15 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과업, 공장폐쇄, 원자재 및 에너지의 부족, 운송장애, 생산장비의 고장, 화재, 폭발 또는 정부의 조치 등 판매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는 판매자가 그러한 사건 또는 상황에 의해 이행을 방해 또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해당 개별계약 상의 의무로부터 면제됩니다. 그러한 사건 또는 상황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상업적으로 비현실적이 되거나 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상황이 판매자의 공급업체에 발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전술한 사건이 3 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지속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고 해당 개별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제 16 조 지급지

상품 또는 서류의 인도지에 관계없이 지급지는 판매자의 영업장소로 합니다.

### 제 17 조 의사표시

일방 당사자가 수령하도록 요구되는 통지 또는 기타 의사표시는 오로지 해당 통지 또는 의사표시가 해당 당사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효됩니다.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통지 또는 기타 의사표시는 반드시 해당 기한 내에 수령당사자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 제 18 조 계약의 해제

구매자가 지급불능상태가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거나 또는 법정관리 또는 청산절차를 개시하거나 또는 구매자를 상대로 파산, 법정관리 또는 청산절차 신청을 하는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기타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개별계약을 즉시 중단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제 19 조 관할

본 판매일반조건 또는 개별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판매자의 재량에 따라 판매자의 주된 영업장소 또는 구매자의 주된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따릅니다.

### 제 20 조 준거법

본 계약관계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규율 됩니다.

### 제 21 조 계약언어

본 판매일반조건이 해당 개별계약이 체결된 언어 ("계약언어") 외에 다른 언어로 발표되는 경우, 그러한 번역본은 오로지 구매자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해석상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언어 본이 구속력이 있습니다.

### 제 22 조 가분성

만일 본 판매일반조건 또는 개별계약의 어떤 조항이 정부기관에 의해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판정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온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며 또한 본 계약을 통해 의도한 거래 역시 그 계약적, 법률적 실체에 있어서 당사자들에게 불리하게 영향 받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은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 판 매 일 반 조 건

당사자들은 당초의 의도와 목적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본 판매일반조건 또는 개별계약을 수정하기로 하며 이를 위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